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1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의 확대 운영에 따른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약칭을 제1조에서 제3조로 변경

나.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의 확대 운영 (버스1대→2대, 노선정비)에 따른 위탁운영 근거조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
(전화 : 2600-1807, 팩스 : 2600-1840)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을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3조(정의)(생 략)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생 략)	제3조(정의)(현행과 같음)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 2. (생 략)
제17조(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① 구청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17조(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